



북한 강건 군사훈련지역에서 포착된 이례적인

장면: 대공포를 이용한 처형의 증거인가?

저자: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조셉 버뮤데즈 (AllSource Analysis, Inc.)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올소스 어널리시스(AllSource Analysis, Inc.)는 최근 평양 인근 지역의 위성 사진을 분석하던 중 대공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공개처형 한 것으로 보이는 끔찍한 장면을 포착하였다.

강건 군사훈련지역은 평양직할시에서 북쪽으로 22km 지점에 있다. 훈련 시설의 규모, 구성과 위치로 보았을 때, 이 지역은 평양방위사령부 소속 부대, 국가안전보위부, 또는 남서쪽으로 6km 떨어져 있는 강건종합군관학교의 교원과 사관생도가 이용하는 시설로 판단된다. 군사훈련지역의 면적은 약 12km²이며, 지역 내에 여러 개의 소규모 훈련 시설이 분산되어 있다.

이 중에는 순안구역 동산리(舊 성이리)의 작은 마을에서 북동쪽으로 1.5km 지점에 소화기(小火器) 사격 훈련장이 있다 (북위 39. 13 48.64°, 동경 125. 45 29.03°). 훈련장의 길이는 약 100m, 너비는 약 60m이며, 총 11개의 사격 레인이 있다. 훈련장의 남단에 관측구역과 주차구역이 있으며, 작은 배수구가 사격장을 가로로 이등분한다. 이는 북한 전역에 있는 다른 훈련장과 같은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 훈련장은 소화기 사격 훈련을 위해서 설계되었으며, 7.62mm(표준 AK-47 소총 탄환)나 그 이하 규격의 탄환을 수용할 수 있다. 권총에서 경기관총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무기에 대한 숙련도를 유지하기 위한 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장이다.

2014년 10월 7일경 강건 소화기 사격 훈련장에서 매우 이례적인 활동이 위성사진에 포착되었다. 사격 위치에는 군인들이 없었고, 대신 사격 위치와 관측구역 사이에는 ZPU-4 대공포 6대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다. ZPU-4는 미군이 사용하는 .50 중기관총과 유사한 14.5mm

구경의 중기관총 4정이 바퀴가 달린 몸체에 장착된 연장포로, 비행기나 헬기를 격추하기 위해 쓰이는 무기이다. 이러한 무기를 소화기 사격 훈련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으며 실용적이지도 않다. 총 24정의 중기관총이 장착된 ZPU-4 대공포 6대가 동시에 발포될 경우, 그 화력은 훈련장의 후방 방어벽을 순식간에 파괴해 재건축해야 할 정도로 강하다.

ZPU-4의 몇 미터 뒤에는 한 줄로 나열된 군인들 또는 장비들이 있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 뒤로는 크기가 각기 다른 트럭 5대, 대형 트레일러 한 대, 그리고 버스 한 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차량으로부터 북한 고위 간부나 주요 인사가 현장을 관측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위성사진에서 가장 수상하게 여겨져야 할 부분은 ZPU-4로부터 불과 30m 가량 떨어진 곳에 세워져 있는 표적들이다.

이 위성사진은 대공포를 이용한 공개처형이 진행되기 직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료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대공포의 단거리 사격 훈련 참관을 위해 고위 관료와 주요 인사를 차량에 태워 온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만일 이 대공포들이 사격 조준기 조정을 위해서 사격장에 배치되었다면, 100m의 단거리 훈련장에서 이 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비실용적이다. 이러한 장소에서 실탄 사격 연습을 하는 것은 더욱더 비현실적이다. ZPU-4 대공포의 최대 사거리는 8,000m이며 탄환의 최대 도달 고도는 5,000m이다. 불과 30m밖에 떨어지지 않은 목표물을 수평으로 사격하기 위해서 6대의 ZPU-4 대공포를 배치한다는 것은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무런 실질적인 용도가 없다.

따라서 10월 7일의 위성사진을 가장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해석은 섬뜩한 공개처형뿐이다. 단 하나의 .50 기관총 탄환이 인간의 신체를 얼마나 훼손시킬 수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24정의 중기관총이 사람을 향해 발포되는 끔찍한 장면을 상상하기만 하더라도 몸서리를 칠 것이다. 처형되는 사람의 몸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속을 뒤틀리게 하는 이토록 잔혹한 행위는 형벌의 과도함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된 미국의 헌법 수정 제8조가 규정하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지나치게 억제된 표현처럼 들리게 한다.

북한의 공개처형에 대한 과거의 보도에 비춰보면, 이와 같은 비극적이며 괴상한 사건은 김정일의 북한에서는 불행히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뉴욕 타임스의 최상훈 기자와 데이비드 생어 기자는 김정일의 고모부 장성택이 처형되기 몇 일 전에 장성택의 최측근 2명이 고사총으로 처형되었다고 2013년 12월에 보도했다.¹ 또한, 2013년 여름에 국가정보원과 한국 언론은 예술단에서 쫓겨난 북한의 예술단원들이 같은 방법으로 끔찍하게 처형되었다고 전했다.

1 최상훈, 데이비드 생어. “Korea Execution is Tied to Clash Over Business” (북한 처형, 이권 갈등과 관련 있어). 「뉴욕 타임스」, 2013년 12월 23일. http://www.nytimes.com/2013/12/24/world/asia/north-korea-purge.html?_r=0.

북한 정권이 2차 권력 세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 초부터 착수한 대대적인 숙청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AP 통신은 2015년 4월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을 인용하며 올해에만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의 지시하에 15명의 고위 인사가 처형되었고, 그들의 죄목은 최고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보도했다. 이 중 차관급에 해당하는 북한의 한 간부는 “김정은의 산림 정책에 대해 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1월에 처형되었다”고 AP는 전했다.²

2015년 4월 13일에 스티븐 해거드 박사와 북한인권위원회 이사회 임원 마커스 놀랜드(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겸 선임연구원)는 북한 전문 블로그 *North Korea: Witness to Transformation*에서 북한 전문 매체인 뉴포커스의 영문 사이트에 게재된 한 기사를 주목했다. 뉴포커스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가 2014년 가을 정권 최고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9.8 작전”에 돌입했다고 밝히며, 이 조치는 “보위부와 인민보안부의 군사화”를 더욱더 강조함으로써 북한 내의 감시, 통제, 억압, 그리고 처벌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조치라고 분석했다.³

이 새롭고 방대한 조치에 포함된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용서를 받은 범죄자들은 대부분 재범 가능성이 크다...이제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은 때가 왔다. 불순하고 적대적인 분자들은 충성과 함께 제거되어야 하며, 대중을 각성시키기 위해서라면 공개처형도 마다치 않을 것이다.” 이 조치의 일부로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는 사형 집행을 용납시키는 듯한 다음과 같은 조항이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뉴포커스는 전했다: “반 정권 행위가 발각될 시에, 보위부 요원들은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총살을 집행할 수 있으며, 그 후에 처형된 자와 그의 죄목에 대해 평양에 보고해야 한다.”⁴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의 요원에게 북한 시민을 총살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ICCPR) 제6조 1항의 일부인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

2 AP 통신. “S. Korea Says Kim Jong Un Executed 15 Officials This Year” (김정은의 지시하에 올해에만 북한 고위 관료 15명 처형). 「뉴욕 타임스」, 2015년 4월 29일. http://www.nytimes.com/aponline/2015/04/29/world/asia/ap-as-koreas-tension-.html?_r=0.

3 “North Korea’s State Security and People’s Security Ministries Implement ‘9.8 Measures’”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 9.8 작전 실시). 「뉴포커스 인터내셔널」, 2015년 4월 12일. <http://newfocusintl.com/exclusive-north-koreas-state-security-and-peoples-security-ministries-implement-9-8-measures/>.

4 스티븐 해거드. “Slave to the Blog: Trojan Horse Edition.” 「North Korea: Witness to Transformation」 (블로그), 2015년 4월 13일. <http://blogs.piie.com/nk/?p=14032>.

당할 수 없다”에 명백히 위반된다.⁵ 또한, 대공포를 이용한 공개처형은 ICCPR 제7조의 일부인 “누구도 고문 혹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수치스러운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에 틀림없이 위반된다.⁶ 북한은 1981년 ICCPR에 가입했다.⁷ 통일연구원의 2014년 북한 인권백서는 2009년 후반 북한의 전면적 화폐개혁 이후부터 공개처형 횟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김정은 정권 아래 내부통제강화로 이러한 추세는 쉽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⁸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UN COI)의 보고서는 “북한 당국은 국가 정책에 따라 종종 심각한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범죄 혹은 기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판을 통해서 또는 재판 없이, 공개적 혹은 비밀리에 처형을 집행한다”고 결론지었다.⁹

UN COI는 이처럼 “정기적으로 공개처형을 하는 이유는 일반 주민들에게 정권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판단했다.¹⁰ 2014년 2월에 공개된 이 보고서는 “2013년 후반엔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개처형이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도 분석했다.¹¹ 공개처형은 김정은 정권의 “공포정치”를 위해 사용되는 끔찍한 도구 중 하나이다.¹²

5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6조 (1966).

<http://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cpr.aspx>.

6 위와 동일, 제7조.

7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Status of Ratification: Interactive Dashboard” (국가별 국제 인권 조약 비준 현황). <http://indicators.ohchr.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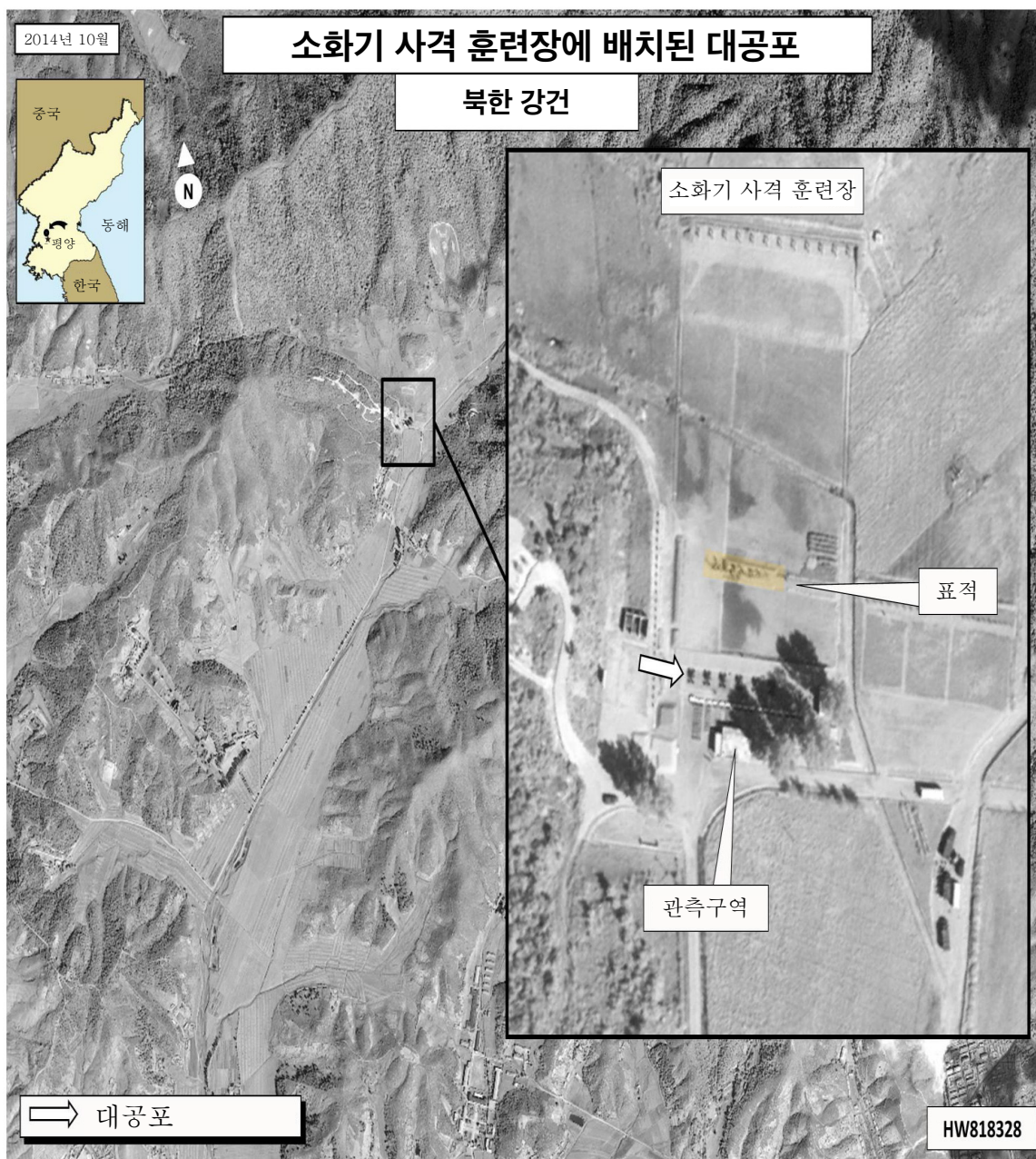
8 한동호, 김수암, 이규창, 이금순, 조정아. 「2014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25, 103. http://www.kinu.or.kr/report/report_03_01.jsp?page=1&num=37&mode=view&field=&text=&order=&dir=&bid=DATA04&ses=.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UN 인권이사회 제25차 회의 의제 4. UN 문서 A/HRC/25/63. 2014년 2월 7일: 12 (한국어 번역문). <http://www.ohchr.org/EN/HRBodies/HRC/CoIDPRK/Pages/ReportoftheCommissionofInquiry-DPRK.aspx>.

10 위와 동일, 12-13.

11 위와 동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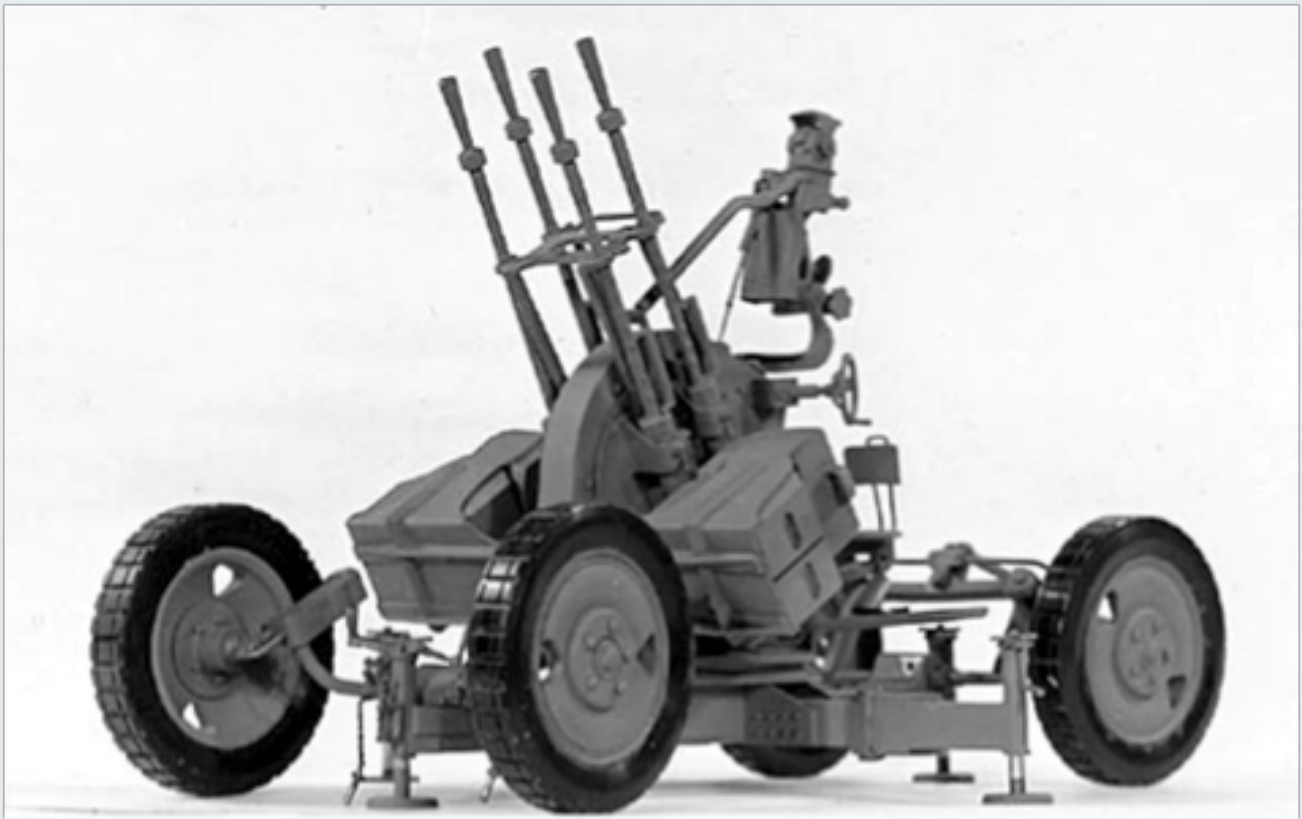
12 “North Korea Human Rights Outlook for 2014... ‘Concerning of Political Camps Expansion and Reign of Terror’” (2014년 북한 인권 전망: 정치범수용소 확장과 공포정치). 「HRNK Insider」, 2014년 1월 3일. http://www.hrnkinsider.org/2014_01_01_archive.html.



좌측 상단의 지도는 이 위성사진에 포착된 지역의 위치를 보여준다. 사진에 포착된 이 지역은 평양의 외곽에 있다. 우측에 삽입된 사진은 소화기 사격 훈련장을 확대한 것이며, 관측구역, 관측구역 앞에 놓인 대공포, 그리고 표적을 볼 수 있다.



강진 소화기 사격 훈련장, 2014년 10월 16일. ZPU-4 대공포나 표적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 DigitalGlobe 2015)



ZPU-4 대공포 (출처: 미국 육군)